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 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20○○. ○. ○.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이 별첨 물품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유체동산가압 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귀원소속 집행관 ■■■에게 위임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첨 물품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 2.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한 물품은 의복, 침구, 가구 등으로 신청인의 가족으로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품이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 물품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1통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집 행 관 의 집 행 행 위 에 대 하 여 는 그 집 행 절 차 를 실 시 할 곳 이 나 실 시 한 곳 을 관할하는 지 방 법 원이 집행법원으로 됨)	제출기간	・원칙 : 강제집행이 개시권 후부터 종료 전까지 ・예외 : ※아래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 런 법 규	민사집행법 제1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송달료 : 당자사수×3,72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집행기관이 집행을 실시할 때 그의 책임 하에 조사 판단하여야할 집행절차의 형식적 흠만이 이의신청의 이유이고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흠 등 집행기관에 조사 권한이 없는 실체상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또는 이의신청)에 의할 것이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5. 30.자 80다490 결정).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장차 경매절차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 예 외 : 집행관이 집행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민사 집행법 제16조 제3항)와 특별한 사정 아래 위법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전에도 이의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69. 11. 20.자 64마579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